

2024학년도 소수집단학생(다문화가족,외국인,탈북민학생) 지원 내용 안내

2024.3. 인재개발처 학생팀

1. 소수집단학생 지원부서(학생팀) 소개

- 위치: 청강홀 4층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 연락처: 031-639-4479

2. 운영목적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탈북민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사활동의 참여를 보장
- 타 부서들과 협력하여 소수집단학생의 요구와 특성에 맞춘 학습 및 생활 지원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

3.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설립: 2024.03.01.
- 목적
 - 학생 및 교직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학생,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탈북민 학생편의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4. 소수집단학생 지원 절차

단 계	세부 내용
1. 소수집단학생 현황파악 및 요구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탈북민 신입생 등록 및 재학 소수학생 학적 변동 확인- 신규 등록하는 소수학생은 온라인 등록신청서 통해 등록 서류 제출- 등록시기: 상시- 온라인 등록 신청 시 요구조사도 함께 시행하여 요구사항이 있는지 파악- 해당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 및 소속 스쿨과 공유
2. 지원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자료 및 학생의 요구를 기반으로 개개인에 맞는 지원 계획 수립- 결정된 지원 내용 및 지원에 대해 알림※지원이 되지 않거나 유보되는 경우 사유를 알리고 대안 모색
3. 지원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청 시 소수학생의 학습권 및 대학생활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및 제공
4. 실행 점검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및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5. 지원 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내용을 기초로 다음 학기 지원계획 시 논의 및 반영

5. 소수집단학생 규정 안내

- 1) 장학규정 제7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수업료를 납부하고 장학생 선발일자에 재학 중인 자(단, 학기 3/4선 군휴학자 중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는 학생은 예외로 인정한다.)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단, 학점 인정을 받은 신입, 편입, 만학도 재학생은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취득, 졸업 연한 초과자는 현재학기 10학점 이상, 학사학위과정재학생은 현재학기 8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학사경고자는 학업증진 목적을 위해 오름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해당학기에 징계사실이 없는 자(또는 징계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말소 처리가 완료된 자)
 - 천재지변, 감염증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총장이 따로 정하여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다.

- 2)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탈북민 학생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지원)
 - 수강신청 지원 :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도움을 희망할 경우 개별상담과 관련스쿨의 협조를 통해 수강신청 지원
 - 학습멘토링을 요청할 경우 학습도우미 모집 및 선발하여 지원

- 3)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탈북민 학생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상담등)
 - 다문화 가족 학생(외국인, 탈북민 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과 진로 및 취업을 위해 지원
 - 근로장학생 우선선발을 통해 근로장학금 지급
 - 대학생활 고충상담(학생상담 부서와 연계)
 - 진로 및 취업상담과 추후지도(취업담당부서와 연계)

6. 소수집단학생 지원사항 안내

가. 교수학습 지원

- 1) 수강신청 지원 :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도움을 희망할 경우 개별상담과 관련스쿨의 협조를 통해 수강신청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
- 2) 학습도우미 지원 : 요청 시 학습/통역지원을 위한 학습도우미 배치

나. 진로 및 취업지원

- 1) 상담지원
 - 대학생활 고충 상담 : 학생상담 부서와 연계
- 2) 진로 및 취업 지원
 - 진로 및 취업상담, 추후지도 : 취창업센터와 연계

7. 장학금 지원

대상	장학금명	장학규모	최소자격
다문화가정 학생	다문화가정장학금	수업료 500,000원	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정 재학생 중 소득분위 3분위 이하
탈북민학생	디딤돌장학금	수업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전액	를 상 북한이탈주민 재학생
외국인학생	외국학생장학금	수업료*20%	외국 국적 재학생
	글로벌장학금	수업료*30%	외국 국적 재학생 중 TOPIK II 3급 이상 보유자